

## 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

1. 펀드명 : IBK 플레인바닐라 EMP 증권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 사항 :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

3. 시행일 : 2023년 5월 9일

4. 변경대비표

항 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(중략)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(이하 생략)	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(중략)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<u>않으면</u>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(이하 현행과 같음)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(이하 생략) 1~2 (생략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	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(이하 현행과 같음) 1~2 (현행과 같음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 <u>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</u> 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 <u>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</u> 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부 칙	(신설)	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신탁계약은 202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